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673
----------	-------

발의연월일 : 2025. 7. 23.

발 의 자 : 차규근·신장식·박은정
김준형·강경숙·황운하
백선희·김재원·최혁진
서왕진·정춘생·이해민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 폐기물 처리시설 부족, 유해폐기물 처리 기피 및 재난폐기물 대량 발생 문제에 대응하고, 폐자원으로 발생하는 국민건강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6. 10.부터 시행되고 있음.

그런데 산발발생지역의 임야에 잔존하는 수목잔해물, 공장 등의 철거로 방치되는 기계 등은 현행법의 재난폐기물 또는 공공처리대상폐기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를 권역별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폐기물의 범위에 재난지역의 사업장 등에서 방치되는 기계, 차량 등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에 준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고,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

치·운영 기본계획의 현행 단계별 사업추진방향을 권역별 사업추진방향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법을 정비하여 국민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 발생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후단 신설 및 제5조제2항제1호).

법률 제 호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의 사업장에서 방치되는 기계, 차량 등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에 준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단계별 사업추진방향”을 “권역별 사업추진방향”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재난폐기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재난으로 발생한 것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후단 신설>	4. ----- ----- ----- ----- -----. <u>이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의 사업장 등에서 방치되는 기계, 차량 등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에 준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u>
5. ~ 8. (생략)	5. ~ 8. (현행과 같음)
제5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기본계획) ① (생략)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기본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방향 및 단	1. ----- -----권역

<u>계별 사업추진방향</u>	<u>별 사업추진방향</u>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